

용자대상사업주 용자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발급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14일
------	-----	-----	------	-----

1. 신청인 (사업주)	사업장명	대표자 성명
	주민등록번호	업종(주산품)
	사업 개시일	
	사업장 소재지	(전화번호:) (전자우편:) (휴대전화번호:)

구분	기재사항
2. 용자 신청 인원 및 금액	()명, ()천원
3.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하였는지 여부	해당[] / 비해당[]
4.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포함 여부	포함[] / 미포함[]
5. 퇴직일이 확인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 초과자 포함 여부	포함[] / 미포함[]

6. 용자금 지급대상 근로자 및 용자신청금액(단위: 천원): 다수일 경우 별지 작성

성명	주민등록번호	입사일	퇴사일	체불금액	용자신청액	계좌번호
계	명					

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에 대한 용자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사업주)

(서명 또는 인)

근로복지공단○○○지역본부(지사)장 귀하

첨부서류	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」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용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1. 사업개시일은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3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가 된 날(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날)을 기초로 작성합니다.
2.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통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합니다.
3.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사항에 기초하여 해당 란에 √표를 합니다.
4. 용자 신청일이 사업 개시일부터 6개월 이상이 되는지 해당 란에 √표를 합니다(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용자대상이 아닙니다).
5. 6개월 미만 근로자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란에 √표를 합니다(6개월 미만 근로자는 용자대상이 아닙니다).
6. 확인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을 초과한 퇴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란에 √표를 합니다 (확인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을 초과한 퇴직자는 용자대상이 아닙니다).

처리절차

※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